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증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액'이라 함은 보조대상 학교의 관할청이 산정한 보조대상연도의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관할청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대상 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행한다.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증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보조사업
2.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3.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총액으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보조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 (중전의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제7조(보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①보조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보조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보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보조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실적) 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용종료 (실적)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